

## 20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

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사업화 및 실증을 지원하는 「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」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3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1. 사업 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사업화 등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탄소중립 분야 기술 보유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망 기술 보급·확산

#### □ 사업내용 : 탄소중립 우수기술 사업화 촉진 및 현장 실증 지원

- ① (사업화) 탄소중립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검·인증 획득, 투자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
- ② (실증) 구매수요처 보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실증을 위한 설비구축, 성능인증 등 실증 지원
- ③ (투자연계) 바이어·유통사 매칭 등 판로 개척, 특허·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투자사가 편성하거나 기업 성장에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

지원사업	사업비 사용분야	지원한도	정부 지원금
① 사업화	① 사업화 컨설팅(전략, 공정, 경영·투자)	최대 1억 원	최대 2억원
	② 기술융합(기술이전)	최대 1억 원	
	③ 제품개선(디자인, 설계 등)	최대 2억 원	
	④ 검·인증(인증 취득 등)	최대 1억 원	
	⑤ 시장진출(마케팅, 해외진출 등)	최대 1억 원	
② 실증	① 인건비	사업 안내서 참조	최대 6억원
	② 사업비		
	③ 여비		
	④ 유형자산		
	⑤ 무형자산		
③ 투자연계	① 후속투자(IR 고도화, 피칭 등)	사업 안내서 참조	최대 4억원
	② 기술융합(공동연구개발 등)		
	③ 개선(디자인, 공정 개선 등)		
	④ 협업체계(해외진출 지원, 판로개척 등)		
	⑤ 기타(특허, 법률, 지재권 취득 등)		

- \* 총 사업비 내 사용 분야는 자율 선택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업 내용은 사업 안내서 참고
- \*\* '투자연계' 트랙은 사업비를 같은 컨소시엄 내 투자사(개인·AC·VC)에 집행 불가

□ 지원규모 : 총 45억원 이내

지원 유형	지원 규모	지원 금액	보조율	지원 내용
기술 사업화	10개사	평균 1.5억원(최대 2억원)	75%	컨설팅, 제품개선, 국내외 인·검증 등 사업화
현장 실증	4개사	평균 4.5억원(최대 6억원)		국내·외 수요처 현장성능 점검, 제품개선·설치 등 실증
투자 연계	3개 컨소시엄*	평균 3억원(최대 4억원)		바이어·유통사 매칭 등 판로 개척, 특허·회계 전문가 멘토링 등 창업보육 프로그램, 국내·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

- \* 컨소시엄 : 투자사(개인·VC·AC) 1개사와 중소기업 1개사로 구성(최근 3개년 이내 기업이 민간으로부터 투자받은 전체 금액의 2배까지 신청 가능)
- \*\* 지원기업 수 및 지원 규모는 신청·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□ **지원기간** : '26년 협약일 ~ 26년 11월 30일 예정(7개월 이내)

□ **지원대상** : 각 과제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

- ① **(사업화)** 탄소중립 핵심기술 **소유권**(특허권 등) 및 **정부 R&D 성공 판정** 등 보유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- ② **(실증)** 수요기업의 **확약서**(계약서 등) 확보 등 사업화 실현성이 높은 기업
- ③ **(투자연계)** 모집 마감일 이전 **3년 내 선투자** 받은 중소기업\*(신청 기업에 투자한 투자사(개인·VC·AC)와 구성된 컨소시엄 참여)

구 분	사업화	실증	투자 연계형(신설)
지원대상	탄소중립 혁신기술(기후테크 등) 보유 중소기업		
신청자격 (의무사항)	특허권(실시권) 등 보유기술(3년이내) 또는, 정부 R&D 성공판정(3년내)	수요기업 확약서(계약서 등) 제출 (수요기업 참여시 우대지원) * TRL 6단계 이상기업	기후테크 혁신 중소기업과, 해당 기업에 직전 3년 내 투자한 개인·AC·VC로 구성된 컨소시엄

\* 지원기업 수 및 지원 규모는 신청·선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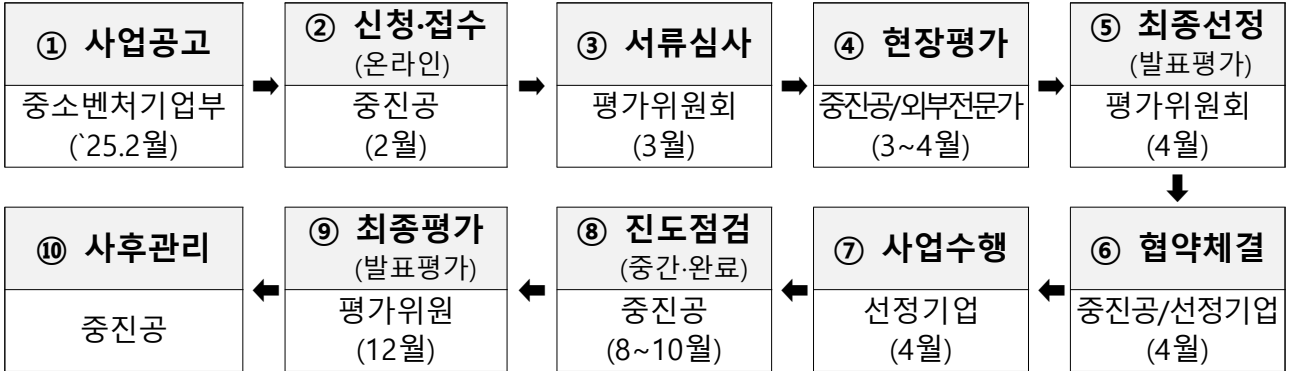
\*\* '25년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은 '26년도 다른 트랙 지원 가능(신청안내서 참고)

□ **추진체계**



## 2. 지원 및 선정절차

### □ 지원절차



\* 상기 일정은 과제 수행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선정절차

- ① (서류심사) 신청 자격요건, 제한 대상 여부, 사업계획 타당성, 기술성, 사업성, 필요성 등 서류 평가
- ② (현장평가) 보유기술 수준, 보유시설, 운영조직 등 현장점검 및 평가  
\* '실증' 트랙은 현장평가 필수, '사업화' 및 '투자연계' 트랙은 필요시 현장평가 진행
- ③ (최종선정) 발표평가를 통해 정책지원 시급성, 효과성, 파급성 등 최종 지원기업 선정  
\* 미선정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예비 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추가 지원 예정  
※ (우대가점) 항목당 1점, 최대 5점까지 인정

가 점 항 목	비 고
① 혁신형 중소기업(이노비즈 또는 메인비즈 또는 벤처기업)	인증서
② 장애인 기업 또는 여성 기업	확인서
③ 혁신 기술 보유기업 : 초격차 스타트업 1,000+ 프로젝트 선정기업,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, TIPS 성공기업, 최근 3년 이내 CES 혁신상 수상기업	선정서 등
④ 24,25년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지정기업 (유효기업)	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
⑤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'우수' 판정을 받은 기업	최종평가확인서 등
⑥ 2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 사업화 참여 기업 중 '우수'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	통보공문

### 3. 신청기간 및 방법

- **접수기간** : 2026.2.9.(월) 09:00 ~ 2026.2.25.(수) 18:00까지
- **신청방법** : ESG통합플랫폼(<https://esg.kosmes.or.kr>) 온라인접수  
\* 우편(서면)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
- **문의처** : 중소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 
(TEL. 055-751-9733, 9738 / E-mail. bk123@kosmes.or.kr)
- **신청서류**

제출서류 목록	제출	비고
① 사업신청서(사업계획서 포함)	필수	날인본
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(3개월이내)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
③ (기업·대표자)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- 국세 : 국세청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발급. 지방세 : 민원24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">www.minwon.go.kr</a> ) 발급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5년 12월 31일 기준) - 민원24( <a href="http://www.minwon.go.kr">www.minwon.go.kr</a> ) 발급	필수	-
⑤-1. 기업·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 1부 ⑤-2. 청렴 서약서 각 1부 ⑤-3. 대표자 및 사업책임자 신분증 사본 1부(주민번호 뒤 여섯자리 삭제후 제출)	필수	서명(날인) 필수
⑥-1.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('22, '23, '24년) ⑥-2. 부가가치세표준과세증명('25년) / 국세청( <a href="http://www.hometax.go.kr">www.hometax.go.kr</a> ) 발급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
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
⑧ 신청기업 자가진단 확인서, 사실 확인서 각 1부	필수	날인본
⑨ 신청요건 증빙서류 각 1부 ○ (사업화) 3년 이내 보유기술 - (특허권) 특허권 등록원부 - (국가R&D 완료판정)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( <a href="http://www.ntis.go.kr">www.ntis.go.kr</a> ) 확인 및 제출 - (기술이전) 기술이전계약서, 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○ (실증) 6개월 이내 증빙서류 - 계약의향서(LOI), 구매조건업무협약(MOU), 공급계약서 등 * 수요처 직인 날인 必 ○ (투자연계) 3년 이내 투자 증빙서류 등 1) 투자관련 서류 : 투자계약서, 주주명부, 투자금 납입증빙 등 2) 컨소시엄 참여 확인서 * VCAC 직인 날인 必, 투자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(기술관련 서류 필요시 제출)	필수	접수마감일 기준
⑩ 기타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	해당시	접수마감일 기준, 유효(확정) 서류만 인정
⑪ 회사(제품) 관련 소개서	해당시	제품 및 회사소개서
⑫ 수출실적증명(해당시 제출) *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분	해당시	2025년도 연간실적 분
⑬ 기후테크분야 인증(해당시 제출) * 환경신기술(NET), 녹색인증, 환경기술성능확인 등 기후테크 및 환경 분야 관련 각종 인증	해당시	유효서류만 인정

\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가능